

실종아동등 지문등정보 등록 동의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등록대상 아동등	성 명	주민등록번호
	주 소	전화번호
법정대리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참여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
1. 지문등정보 등록의 목적: 지문 등 정보를 활용한 실종아동등의 발견
2. 지문등정보 등록의 근거: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

※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판단되면 []란에 체크[√]를 하시기 바랍니다.

- 1) [] 지문등정보의 등록근거 및 목적, 활용방법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.
- 2) []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,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,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지문등정보를 폐기합니다.
- 3) []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지문등정보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4) [] 경찰은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의 발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.
- 5) [] 지문등정보의 등록 여부는 등록대상 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릅니다.

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및 「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대상 아동등에 대한 지문등정보의 등록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등록대상 아동등

(서명 또는 인)

법정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참 여 인

(서명 또는 인)

경 찰 청 장 귀하

첨부서류	보호시설 설치 신고증, 후견인 지정서 등 아동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법정대리인이 동의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